

# 친환경기술분야

# 차례

1. 사업별(분야별) 예산현황 .....
2. 신기술보급사업추진 요령 .....
3. 벼 분야 ..
  - 가. 사업현황 .....
  - 나. 사업별 세부추진 요령 ..
    - 1) 고품질 쌀 생산비절감 종합기술 시범 .....
    - 2) 쌀 품질관리 기술 시범 .....
    - 3) 특수 기능성 쌀생산 유통 기술 시범 .....
    - 4) 탑라이스 생산단지 육성 .....
    - 5) 지역특성화사업(고품질 쌀생산) .....
    - 6) G+라이스 생산단지 육성 .....
    - 7) 벼 우량종자 자율교환 채종포 사업 .....
    - 8) 경기미 가공 상품화 시범 .....
    - 9) 벼 직파재배 단지 조성 .....
    - 10) 경기도쌀연구회 가공센터 운영 .....
    - 11) 벼 생육조사 .....
4. 병해충 및 기상재해 분야 ..
  - 가. 사업현황 ..
    - 1) 추진현황 요약 .....
  - 나. 사업별 세부추진 요령 ..
    - 1) 농작물 병해충 종합진단실 운영 및 업무능력 배양 .....
    - 2) 농작물 병해충 장비보강 .....
    - 3) 천적이용 해충방제 전문가 양성 교육 .....
    - 4) 기후온난화 대응 미기상 측정기술 .....
    - 5) 병해충 원격진단시스템 구축 .....
    - 6) 벼 병해충 예찰포 운영 .....
    - 7) 벼 병해충 관찰포 설치 운영 .....
    - 8) 소득작물 병해충 조사(채소, 과수) .....
    - 9) 농작물 병해충 예찰회의 및 발생정보 발표 .....
    - 10) 비래해충 예찰 .....
    - 11) 병해충 예찰결과 신속한 방제통보 .....
    - 12) 기술영농 종합상황실 운영 .....

## 5. 친환경농업 분야 .....

- 가. 사업현황 .....
- 나. 사업별 세부추진 요령 .....

  - 1) 가축분뇨를 활용한 자연순환농업 시범 .....
  - 2) 친환경 유기농산물 생산 기술 시범 .....
  - 3) 친환경농업관리실(종합검정실) 운영 .....
  - 4) 친환경농업관리실(종합검정실) 검정장비 보강 .....
  - 5) 유해물질 및 토양분석 장비지원 .....
  - 6) 농산물 안전성분석실 운영 .....
  - 7) 친환경농업 특성화 지원 .....
  - 8) 시설재배지 현장 진단기술 지원 .....
  - 9) 시설채소 유기재배 단지 조성 .....
  - 10) 과채류 친환경 무농약 유기재배 .....
  - 11) 친환경분야 기타보고사항 .....

## 6. 전 · 특작분야 .....

- 가. 사업현황 .....
- 나. 사업별 세부추진 요령 .....

  - 1) 잡곡 경쟁력향상 프로젝트 .....
  - 2) 가공용 서류재배 확대 시범 .....
  - 3) 인삼 안전재배 생력 기계화 시범 .....
  - 4) 벼섯 비닐멀칭 및 환기개선 시범 .....
  - 5) 특용작물 상품화 프로젝트 시범 .....
  - 6) 신품종 경기콩 브랜드화 시범 .....
  - 7) 전작물 저장력 향상 시범 .....
  - 8) 신품종 우량묘삼 확대보급 .....
  - 9) 인삼 저온저장 품질향상 시범 .....
  - 10) 에너지절감형 벼섯생산 시스템 구축 .....
  - 11) 민속산채 고사리재배 단지 조성 .....

## 7. 축산 분야 .....

- 가. 사업현황 .....
- 나. 사업별 세부추진 요령 .....

  - 1) 축사 환경개선 및 에너지절감 시범 .....
  - 2) 축분연료 제조 에너지절감 시범 .....
  - 3) 국내육성 신품종 조사료재배 기술보급 시범 .....

- 4) 친환경 흑염소 생산 시범 .....
- 5) 축사 악취저감 기술 시범 .....
- 6) 고품질 벌꿀 생산성향상 시범 .....
- 7) 가축질병 예방 생력화 시범 .....
- 8) 봉독이용 항생제 저감 기술 시범 .....
- 9) 인공수정 화상인식 주입기활용 기술 시범 .....
- 10) 축산물 가공육 제품 농가제조 기술 시범 .....
- 11) 친환경 축산관리실 운영 .....
- 12) 친환경 미생물생산실 운영 .....
- 13) 사육단계 HACCP적용 시범 .....
- 14) 지역농업특성화사업(한우명품화) .....
- 15) 친환경 축산관리실 장비 지원 .....
- 16) 청보리 채종 및 이용단지 조성 .....
- 17) 미생물이용 친환경농업 육성 기자재지원 .....
- 18) 유용미생물 생산, 운영 지원 .....
- 19) 미생물 이용 효과 실증시험 .....
- 20) BM활성수 생산 플랜트 .....
- 21) 축사 에너지 절감 기술보급 시범 .....
- 22) 항생제 대체기술 실증시범 .....
- 23) 임신돈 전자식 개체 사양관리 실증시범 .....
- 24) 축사 악취제거 기술 시범 .....
- 25) 가축분뇨 자원화 기술 시범 .....
- 26) 가축 사양관리 원격제어 시스템 시범 .....
- 27) 미생물을 이용한 사료효율 향상 시범 .....
- 28) 종봉개량 보급 시범 .....
- 29) 친환경축산관리실 운영지원 .....
- 30) 고형미생물 생산 기술 실증시범 .....
- 31) 축산분야 신기술보급 실적 보고 .....
- 32) 2009년도 추진 시범사업 결과 보고 .....
- 33) 주요 악성 가축전염병 예찰 .....

- 8. 채소 분야 .....**
- 가. 사업현황 .....
- 나. 사업별 세부추진 요령 .....
- 1) 시설채소 생력자동화 정밀 관수관비재배 시범 .....

- 2) 시설채소 생력화 에너지절감 패키지 시범 .....
- 3) 하이베드 이용 딸기재배 시범 .....
- 4) 친환경 신선채소 패키지시범 .....
- 5) LED이용 시설원예 전조재배 시범 .....
- 6) 시설원예 고체연료 이용 에너지절감 시범 .....
- 7) FTA대응사업(채소류재배 수급조절 및 신선편이 식품생산) ...
- 8) 지하수이용 냉난방 시스템 시범 .....
- 9) 배기열 회수장치 시범 .....
- 10) 채소류재배지 토양 품질관리 시범 .....
- 11) 홍쌈추 등 신선채소 안전생산 기술 시범 .....
- 12) 단동형 시설하우스 천창개폐 등 환경개선 시범 .....
- 13) 5색 미니채소 재배 시범 .....
- 14) 고품질 4색 단호박재배 시범 .....
- 15) 채소분야 신기술보급 실적 보고 .....
- 16) 2009년도 추진 시범사업 결과보고 .....
- 17) 채소분야 생육조사 보고 .....

## 9. 화훼 분야 .....

- 가. 사업현황 .....
- 나. 사업별 세부추진 요령 .....
- 1) 에너지절감 저온성 화훼생산 시범 .....
  - 2) 자생화 분화생산 기술 시범 .....
  - 3) 원예작물 우리 품종재배 및 신기술 시범 .....
  - 4) 조직배양실 운영 .....
  - 5) 조직배양실 장비 지원 .....
  - 6) 기설치 조직배양실 관리 .....
  - 7) 지역농업 특성화사업(수출농업) .....
  - 8) 화훼 새기술 패키지화 시범 .....
  - 9) 화훼 베드재배 시범 .....
  - 10) 화훼 관수방법 개선 시범 .....
  - 11) 화훼분야 신기술보급 실적 보고 .....

## 10. 수출 농업 분야 .....

- 가. 사업현황 .....
- 나. 사업별 세부추진 요령 .....
- 1) 원예작물 수출 생산단지 육성 .....
  - 2) 수출 원예작물 수확후 관리 일관체계화 시범 .....
  - 3) 에너지절감형 축냉식 컨테이너 보급 시범 .....

11. 과수 분야 .....  
    가. 사업현황 .....  
    나. 사업별 세부추진 요령 .....  
        1) 탑프루트 생산 단지 육성 .....  
        2) 과수 안정생산 기술 시범 .....  
        3) 과실 수확후 종합 관리기술 시범 .....  
        4) 고품질 복숭아 우산식지주 설치 시범 .....  
        5) 과수 과학영농 기술보급 장비지원 .....  
        6) 지역농업 특성화사업(고품질 과실생산) .....  
        7) 최고과일 생산단지 육성 .....  
        8) 과일 비파괴 당도 선별기술 실증시범 .....  
        9) 과수 우박피해 방지 시설 시범 .....  
        10) 과원 늦서리 폭염극복 시설 시범 .....  
        11) 복숭아 지주개선 시범 .....  
        12) 포도 열과경감 기술 시범 .....  
        13) 과수 지중 냉온풍활용 에너지절감 시범 .....  
        14) 과일 수확후 안전출하 기술 시범 .....  
        15) 3색 포도단지 조성 .....  
        16) 2009년도 추진 시범사업 결과보고 .....  
        17) 2007 ~ 2009년도 추진 저장관련 시범사업 성과보고 .....  
        18) 2008 ~ 2009년도 추진 도비 시범사업 결과보고 .....  
        19) 과수분야 생육조사 .....  
        20) 과수분야 신기술보급 실적보고 .....
12. 품목별농업인연구모임 육성 .....  
    가. 사업현황 .....  
    나. 사업별 세부추진 요령 .....  
        1) 품목별농업인연구모임 육성 .....  
        2) 품목별농업인연구모임 전문능력 향상 .....  
        3) 품목별농업인연구모임 육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
13. 농업인기술개발사업 운영 .....  
    가. 사업 일반현황 .....  
    나. 사업 추진 요령 .....
14. 2010 대한민국 최고농업기술 명인 선발 .....
15. 농촌진흥기관 기술지원 농산물 공동표시제 도입 .....

## 12. 품목별농업인연구모임 육성 분야

### 가. 사업 현황

구 분	사 업 명	사업량 (개소)	개소당 사업비 (백만원)	계	국비	도비	시군비	자부담	대상시군	
계	3종	126		232.5	66.25	30	136.25	-		
	소계 : 2종	26		132.5	66.25	-	66.25	-		
국 비	농업 전문 인력 양성	품목별농업인 연구모임육성	25	2.5	62.5	31.25		31.25	용인2,평택,시흥, 화성,이천, 김포, 광주, 안성3,여주2, 양평,고양,남양주2, 파주,포천,양주2, 가평2,연천2	
	품목별농업인연구모임 전문능력향상		1	70	70	35		35	-	여주
	소계 : 1종	100	-	100	-	30	70	-		
도 비	품목별 연구회	품목별 연구회 육성	100	1	100	-	30	70	-	수원,성남2,부천, 안산2,용인6,평택7, 시흥2,화성2,이천10, 김포7,광주,안성6, 오산,여주10,양평8, 고양,의정부,남양주8, 파주4,구리,포천4, 양주5,동두천,가평3, 연천6

### 1) 품목별농업인연구모임 육성

\* 이 사업에 대한 해석기관은 친환경기술과(지도관 이수영, 지도사 이준배, 031-229-5863)입니다.

#### □ 목 적

- 개별농가의 취약성을 보완하기 위해 지역별 품목조직을 대상으로 집단지도를 통해 활동의 조직화, 생산 및 가공, 경영 · 마케팅에 대한 교육, 학습 활동을 촉진하여 품목조직의 경쟁력을 강화
- 새 기술 정보네트워크 구축과 협동 경영 등을 통해 고부가가치 창출능력을 높여 소득 증대에 기여

## □ 추진 방향

- 지역농업특성화에 맞게 연구모임 등 생산자 조직 지도체제를 구축
- 지역 내 생산자 조직과 적극 연계하여 생산과 경영, 유통 등에 관한 기술 정보 교류 강화
- 개별 활동, 판매 보다는 조직화, 공동브랜드 개발 · 사용 등을 통해 결집된 힘을 발휘할 수 있도록 단체활동을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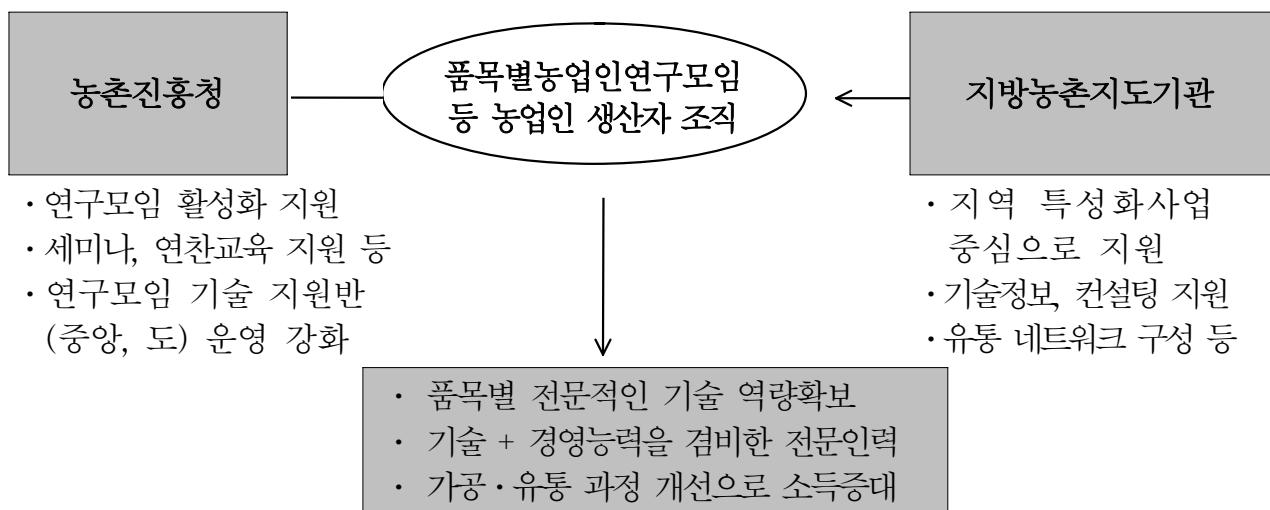
## □ 근거 법령

- 농촌진흥법 제2조 2항 · 3항,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 육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훈령 제691호)

## □ 사업 대상

- 모임 활동이 활발하고 교육, 학습, 문제해결 의욕이 강한 모임
- 몇 년 간 일정 규모 이상의 회원을 확보하여 자율 모임을 운영, 기술의 향상과 경영에 관심이 많은 모임
- 도 단위별 모임의 평가를 통하여 도에서 지정

## □ 육성 체계



## □ 사업 내용

### ○ 조직체계 확립 : 시군, 도·광역단위 자율 육성

#### - 시군단위조직

- 지역내 대표 주산작목을 중심으로 15~20회 조직운영
  - 조직 규모(회원수)는 품목 및 지역특성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
- #### - 도 및 광역단위 조직
- 품목농가가 적은 품목은 3~4개 시군 또는 도단위 광역조직으로 운영
  - 농업기술원 및 소속 특화작목시험장의 연구·지도공무원과 연계강화

### ○ 품목별 농업인연구모임 수준별 지도체계 확립

- **기초단계(매우 미흡, 미흡)** : 회칙 제정 및 운영(조직구성, 회의 진행, 사업 등), 품목별 기술지원, 과제교육, 정보교환, 자조금 조성 등
- **성장단계(보통, 활발)** : 자율적 회의 운영, 개인별 연구과제 수행(농업인 개발과제 수행 등), 공동 교육·생산·구매·판매·유통, 영농현장문제 과제 발굴 사업화, 선진지 견학 및 연찬, 품질관리 기술, 브랜드 개발, 관리자(임원 등) 리더십 교육
- **자립단계(매우 활발)** : 농산물 품질인증 획득, 수확 후 관리기술, 가공사업 개발, 협의체(법인) 구성 공동경영, 수출시장 확보, 내수 유통업체 발굴, 홈페이지 운영 및 전자상거래 추진, 우수 활동사례 홍보 및 전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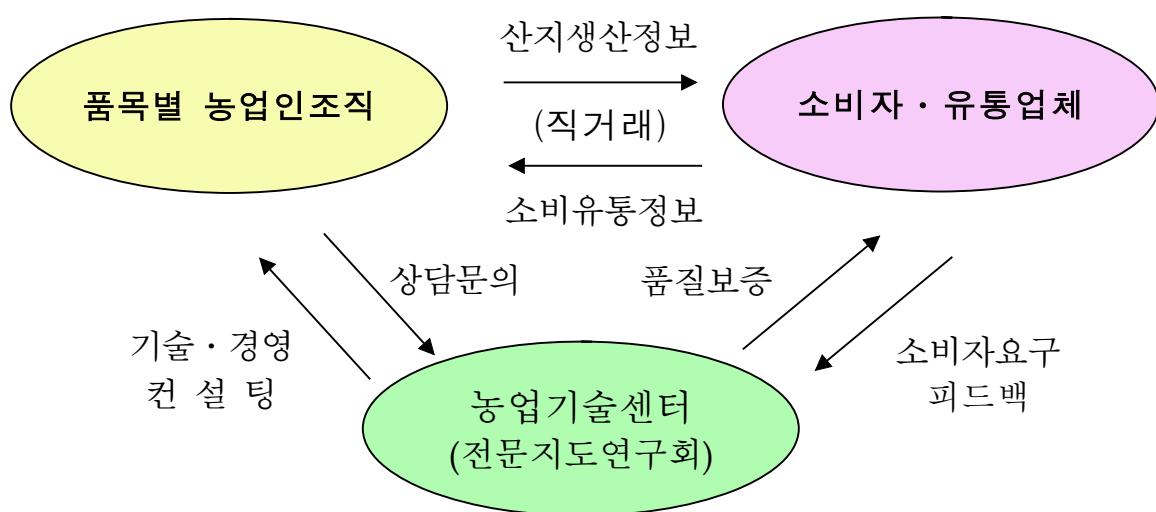
### ○ 각급 단위 지도기관의 부서별 역할 분담 활동지원

- 총괄부서와 품목별 전문지도부서의 분리 운영
    - 총괄담당 : 종합육성계획 수립 등(기관장이 부서 지정)
    - 조직담당 : 해당 품목별농업인연구모임 책임육성  
예) 쌀 연구모임 → 수도담당, 양돈연구모임 → 축산담당 등
  - 생산자 조직 육성지도를 위한 지역실정에 맞는 책임지원제 운영
    - 복수담당제(정·부담당 지정), 1지도사 1품목지도책임제 등
- ※ 전문지도연구회 1회원 1연구모임 책임 지도

### ○ 자생력 제고를 위한 회원중심의 자율적인 조직 운영

- 연구모임 회칙 등의 제정으로 조직 운영의 체계화
- 연구모임의 자생력과 자율성을 높이기 위한 기금 조성 활용

- 새 기술 시범, 경영컨설팅 등 우선 지원
  - 연구기관의 신기술투입 접목연구와 연계 연구과제에 적극 참여 권장
  - 새기술 시범사업, 지역특성화사업 등 각종 시범사업 지원 확대
  - 영농현장 문제해결과제 등 지원사업 우선 배정
- 품목별 특성을 고려한 정기적인 연구모임, 학습활동 전개 유도
  - 분기별 1회 이상 자기주도 학습 : 개인연구과제 발표 등 기술정보 교환
  - 지식정보 습득을 위한 농업관련전문지 및 서적 구입 활용
  - 농촌지도기관의 각종 전문교육을 생산자 조직, 연구모임중심으로 운영
  - 전문지도연구회와 협동연찬회, 유통현장교육 연 1회 이상 개최
- 연구모임 활성화를 위한 임원 과제교육(도단위)
  - 기 간 : 1~2일간(상반기 중 지역실정에 맞도록 시기, 기간 조정)
  - 주요내용 : 조직운영 기법 및 자기학습의 효율적 방안 등
- 농산물 생산 · 유통 · 판매 등에 관한 기술정보 지원 체계 확립



- 연구모임과 전문지도연구회, 소비자 단체 등과 네트워크 구축
  - 전문지도연구회원 중심 연구모임과 소비자 연계 활동 강화
  - 소비자 단체와 연계한 직거래 사업 활성화로 제값받기 실현
  - 소비자 및 유통업체와 연계 강화 : 도, 시군당 1개회 이상 시범운영 후 확산

- 농산물 상품성 제고를 위한 품질관리 지도
  - 포장재 개발 등 농산물 규격화·표준화 생산 활동 지도
  - 고품질농산물 생산을 위한 자체『브랜드개발』연구 활용
  - 친환경 품질인증, 농축산물이력정보체계 도입 활용 등
- 연구모임의 체계적 평가활동을 위해 평가지표개발 결과('08)의 적용
  - 객관적 평가지표에 의한 평가를 통한 시도별 차등 지원
  - 연구모임의 자체 경영분석 등을 통한 경영마인드 확산
    - 연말 총회 시 시산표 작성 등 재무분석을 통한 지속적 경영
    - 경영 컨설팅을 통한 자체 경영분석으로 재무구조의 건전성 확보

## □ 지원내역

- 지원대상 : 활동실적이 우수한 연구모임(125개회)
- 사업명 : 품목별농업인연구모임(국비 25개소), 품목별연구회육성(도비 100개소)
- 사업비 : 162.5백만원(국비 31.25, 도비 30, 시군비 101.25)
- 시군별 지원내역(개소)
  - 국비(25) : 용인2, 평택, 시흥, 화성, 이천, 김포, 광주, 안성3, 여주2, 양평, 고양, 남양주2, 파주, 포천, 양주2, 가평2, 연천2
  - 도비(100) : 수원, 성남2, 부천, 안산2, 용인6, 평택7, 시흥2, 화성2, 이천10, 김포7, 광주, 안성6, 오산, 여주10, 양평8, 고양, 의정부, 남양주8, 파주4, 구리, 포천4, 양주5, 동두천, 가평3, 연천6

## □ 지도활동 결과보고(11. 20한)

- ※ 연구회별 <참고 1>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 활동평가표를 참조하여 작성
- 1) 조직유형(엑셀로 작성)

지역	계(개회)	읍면단위	시군단위	광역단위	도단위
시군					

2) 활동실적(액셀로 작성)

지 역	연구 회명	회원 수	교육 · 연찬실적		활동수준			브랜드 활용 (명칭)	법인설립 여부	자조금 조성액 (백만원)	전 자 상거래 거래
			횟수 (회)	인원 (명)	기초	발전	자립				
oo시군											
계											

3) 지역별 특수사업 추진(아래한글로 작성)

지 역	사 업 명	주 요 내 용
00시군		

4) 주요 활동 사진 : 시군별 2매 내외

5) 문제점 및 건의사항

##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 활동 평가표

○ 연구회명 :

평가요소 및 배점	평가기준 및 배점	현황	평가지표	점수	비고
활동기반(20)	회원 구성(5)		시군단위 : 5점		
			읍면단위 : 3점		
	연구회 사업계획 수립 유무(4)		있음 : 4점		
			없음: 0점		
	회원규모 및 활동연한(3)		5년, 40명이상 : 3점		
			3~5년, 40명이상 : 2점		
			3년 미만, 기타 : 1점		
	지방비 지원(4점)		500만원 이상 : 5점		
			3백만원 이하 : 3점		
			2백만원 미만 : 1점		
회원활동 (30점)	자조금 조성(4점) *회원1인기준		1백 만원 이상 : 4점		
			1백 만원 미만 : 2점		
			없음 : 0점		
	교육 및 연찬 실적(10점)		4회 이상 : 10점		
			3회 : 5점		
			1~2회: 3점		
			없음 : 0점		
	과제 발표 수(10점)		4회 이상 : 10점		
			3회 : 5점		
			1~2회: 3점		
			없음 : 0점		
시장 교섭력 (50점)	농산물 소비촉진 판촉 · 홍보활동(10점)		4회 이상 : 10점		
			3회 : 5점		
			1~2회: 3점		
			없음 : 0점		
	브랜드 개발(10점)		있음: 10점		
			개발 중 : 5점		
			없음 : 0점		
	농산물 품질 인증 여부(10점)		인증: 5점		
			없음 : 0점		
	공동구매 및 판매활동 참여(30점)		80%이상 : 10점		
			60~80% : 8점		
			40~60% : 6점		
			20~40% : 4점		
			20%미만 : 2점		
<b>합계 : 100점</b>					

※ 자료 : 품목별 농업인 조직체 평가체계 및 학습단체 연계방안('08 용역연구결과 1안, 2안 조합)

※ 평가기준 : 60점 미만(기초단계), 60~75점미만(발전단계), 75~ 이상(자립단계)

→ 앞 페이지 행정사항 2) 활동실적 중 '활동 수준' 분류에 활용

## 2)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 전문능력 향상

\* 이 사업에 대한 해석기관은 기술보급부 친환경기술과(지방농촌지도관 이수영, 지방농촌지도사 이준배, 031-229-5863)입니다.

### □ 목 적

- 농업인 생산자단체(품목별농업인연구모임 등)들의 영농현장애로기술 해결을 위한 과제 지원으로 농업기술 향상 및 소득 증대
- 품목별 농업인연구모임의 조직화와 교육, 학습 등 자율적 활동을 촉진 등 연구모임 활성화

### □ 추진 방향

- 품목별 농업인연구모임의 농업기술, 가공, 경영·유통 문제 해결
- 농업인연구모임에서 개발된 기술(내용) 중 회원 상호간 및 인근 농가에의 확대가 필요한 내용의 사업화

### □ 근거법령 : 농촌진흥법 제2조 2항, 3항

### □ 사업대상

- 사업 전년도에 공모를 통하여 도, 중앙에서 심사 후 결정
  - 영농현장에서 필요한 애로기술의 해결과 새로운 기술의 개발과 적용, 가공, 품질개선, 브랜드 개발, 수확 후 관리기술 및 경영·유통개선 등의 지원이 필요한 과제
- ‘품목별 농업인연구모임 활동 지원’ 사업을 통하여 활동 기반이 조성된 연구 모임

### □ 지원내역

- 사업량 : 1개소
- 사업비 : 70백만원(국비·지방비 50%)
- 사업비 지원 내역

사업명 (단체명)	사업비집행계획(백만원)			사업내용
	계	국비	지방비	
고구마 표면처리제 활용시스템 구축 (여주군고구마연구회)	70	35	35	고구마표면처리 시스템 설치

## □ 추진체계

- 사업 주관기관 : 도농업기술원(특·광역시농업기술센터) 및 시군농업기술센터
- 선정절차 : 사업계획서 제출(농업인연구모임) → 시·군단위 심의) → 도(특·광역시)단위 심사 → 중앙단위 1차 서류심사, 도(특·광역시) 단위 추천순위 가중치반영(약1.5배수선정) → 2차 공개발표 및 평가 → 최종선정 (서류평가 40%, 공개평가 60%)

## □ 사후관리

- 시·군 농업기술센터소장은 관련 전문가를 지정하여 사후관리 기술지도 강화
- 시·군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지원사업이 당초 목적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단계별 지도를 철저히 하고 기술 확산 도모
- 보조사업자는 보조목적 및 보조사업 내용에 따라 성실히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지원받은 시설을 처분 또는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군농업기술센터소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

## □ 보고사항

- 2010년도 사업계획 제출 : 1.20(제1호 서식)
- 2010년도 추진실적 제출 : 7.20, 12. 1(제2호 서식)
- 사업계획 수립 및 변경

- 시·군농업기술센터소장은 연구모임의 회원관리 및 운영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고, 사업 참여 농업인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된 세부사업계획을 수립 추진 의무를 가진다.
- 인·허가와 관련된 사업은 지방자치단체의 협조를 받아 추진한다.
- 사업명 또는 사업계획 전체를 변경하거나 사업추진주체(연구모임)의 변경은 불가하다.
- 사업계획(사업비)의 20% 이상을 변경할 시에는 연구모임의 (임시)총회에서 의사를 결정하고, 농촌진흥청장의 승인 후 추진한다.
- 사업포기 및 사업계획(사업비)의 20% 미만을 변경할 시에는 연구모임의 (임시)총회에서 의사를 결정하고, 도농업기술원장(특·광역시 농업기술센터소장)의 승인 후 농촌진흥청장에게 보고한다.
- 사업계획 변경 가능기간은 사업연도말로부터 3개월 이전이어야 한다.

○ 사업비 지출

- 사업비는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보조금 교부조건 등 관련 규정 등에서 정하는 바를 준수한다.

○ 연구모임 교육

- 선정된 사업의 연구모임을 대상으로 사업추진요령, 사업비 집행 방법, 관련 기술 등을 사전에 충분히 교육 실시

○ 사업 지원계획의 취소 :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중앙에서 사업 지원계획을 취소할 수 있다.

- 사업 계획의 수립 및 조정, 변경 추진 등에 있어 연구모임 회원 간 갈등, 불화 등으로 인하여 사업 추진이 어렵거나 지연되는 경우 등에는 사업 지원을 취소할 수 있다.

○ 사업관리

- 도농업기술원 및 시군농업기술센터는 사업 주관기관으로서 사업목표 달성을 위하여 계획의 수립 및 조정, 변경 추진 등에 있어 지휘, 감독 할 수 있으며 사업 완료시까지 책임과 권한을 다하여야 한다.

□ 보고양식

<품목별 농업인연구모임 전문능력향상 지원사업 계획(2010. 1. 20)>

(사업명) 휴먼명조 18point

※ 사업지도담당 : 00농업기술센터 00과 00지도사 00 전화(지역번호)000-0000

□ 목적 및 필요성(15point)

- 목표치가 설정된 구체적인 목적 기술(14point)

□ 연구모임 현황

- 대표자명(전화번호) :
- 연구모임단위(✓ 표시) : 읍면단위, 시군단위, 도단위, 광역단위
- 회원수 :      명(임원현황 회장 , 부회장 , 총무 , 감사 등)

사업계획

- 기간 :
- 규모 :
- 사업비 : 백만원(국비 , 지방비 )
- 총사업비 투자계획

항 목	면적(m <sup>2</sup> ), 단위 등	수 량	금 액(천원)			비 고
			국비	지방비	자부담	

- 사업내용(기술적인 내용을 포함하여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작성)
- 

- 추진 순기표(세부 사업별)

세 부 추 진 내 용	추 진 시 기 (월)											
	1	2	3	4	5	6	7	8	9	10	11	12
o												

생산제품 및 농산물 판매계획(사업장 운영계획)

- 

기대효과

- 기술적, 경제적 측면의 기대효과(추정)

<품목별농업인연구모임 전문능력향상 지원사업 추진 실적(2010. 7. 20, 12. 1)>

사업명 :

연구모임명 :

대표자 : (전 화 : )

주 소 :

추진 실적

사업비 : 백만원(국비 : , 지방비: )

항 목 (세부사업)	계획	실적	비고

사업내용

문제점 및 건의사항

생산제품 및 농산물 판매계획/사업장 운영계획

사업성과(※ 이 사업을 통해 연구모임 운영 및 발전에 끼친 구체적 효과 서술, 지역사회에 미치는 효과 기술)

사업추진 활동, 홍보 실적(사진 4매 이상 포함) 제출

### 3) 품목별농업인연구모임 육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농촌진흥청 훈령 제 691 호

#### 품목별농업인연구모임 육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 1. 제정이유

농업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동일 품목을 경영하는 농업인들이 자율적으로 연구 모임을 조직하여 활동하고 있는 품목별농업인연구모임 육성사업을 농촌지도 기관에서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체제를 명확히 정하려는 것임

##### 2. 주요내용

- 가. 품목별농업인연구모임은 동일 품목을 경영하는 농업인들이 자율적으로 모임을 조직하여 농촌지도기관에 등록하고 승인을 받아 활동함(안 제2조)
- 나. 연구모임의 명칭은 조직의 성격에 따라 품목별 시군단위 연구회, 품목별 연합회, 품목별 중앙단위 연합회 등으로 조직함(안 제4조)
- 다. 연구모임 활동은 현장문제의 자율해결 능력 배양 및 시장교섭력 강화를 위한 공동사업 추진 등의 다양한 공동사업을 추진함(안 제3조)
- 라. 연구모임의 체계적인 조직, 운영 등을 위하여 육성위원회를 두며, 전담부서 등을 지정하여 운영함(안 제6조, 제11조)

##### 3. 관계법령 : 농촌진흥법 제2조

농촌진흥청 훈령 제 691 호

농촌지도사업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이고자 품목별농업인연구모임 육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

2005. 7. 18

농촌진흥청장

## 품목별농업인연구모임 육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농촌지도기관이 자율적으로 조직된 품목별농업인연구모임을 체계적으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용어의 정의)** “품목별농업인연구모임”(이하 연구모임이라 한다)은 동일 품목을 경영하는 농업인 등이 경제적인 이익실현을 위하여 자율적으로 조직하여 농촌지도기관에 등록한 모임을 말한다.

- 제3조(명칭)**
- ① 시군단위 연구모임은 “oo시구(군) oo연구회”라 한다.
  - ② 시군단위 연계조직이 없는 도단위 연구모임은 “oo도 oo연구회”라 한다.
  - ③ 시군단위 연계조직이 있는 도단위 연구모임은 “ oo도oo연구회“라 한다.
  - ④ 중앙단위 연합모임은 “한국oo연구중앙연합회“ 라 한다.

**제4조(연구모임의 조직)** ① 연구모임은 시군단위조직, 광역단위조직, 도단위 연합회, 중앙단위 연합회 등으로 조직할 수 있다.

- 1. 시군단위 조직은 지역특화작목 및 수출(가능)작목 등을 중심으로 조직할 수 있다.
  - 2. 광역단위 조직은 1개 시군에 동일 품목을 경영하는 농가수가 적을 경우 다른 시군 또는 도단위로 조직할 수 있다.
  - 3. 도단위 연합조직은 품목별 시군단위 조직의 임원중심으로 조직할 수 있다.
  - 4. 중앙단위 연합조직은 품목별 도단위 조직의 임원중심으로 조직할 수 있다.
- ② 단위연구모임의 회원수는 지역 및 품목의 특성을 고려하여 효율적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인원으로 구성할 수 있다.
- ③ 연구모임은 자체회칙을 제정하여 운영한다.
- 1. 회칙에는 연구모임의 명칭, 목적, 사업, 회원, 임원, 회의, 제정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5조(활동)** 연구모임은 다음과 같은 활동을 할 수 있다.

- ① 연구모임 특성에 맞는 다양한 연구활동을 위하여 년간 분기별 1회 이상의 정례모임을 개최한다.
- ② 연구모임의 효율적인 육성에 필요한 리더쉽 및 기타 필요한 교육, 선진지 견학 등을 회원, 지도자 및 지도공무원(전문지도사,관리자)등에게 실시할 수 있다.

- ③ 현장문제의 자율해결 능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품목별 경영(생산, 유통, 가공, 판매 등)에 관한 연구활동을 실천하고 다양한 기술정보를 교류한다.
- ④ 개별경영의 한계를 극복하여 생산자가 시장교섭력을 강화할 수 있는 공동 사업을 추진한다.
- ⑤ 소비자단체, 유통업체 등과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유통혁신을 도모한다.
- ⑥ 연구모임은 자생력을 높이기 위해 자조금을 조성할 수 있다.

**제6조(연구모임육성위원회)** 각급단위 농촌지도기관은 품목별농업인연구모임 육성을 위하여 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각급단위 농촌지도기관장으로 한다.
-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관련 지도공무원 5명 내외로 구성하며 외부 전문가를 둘 수 있다.
- ③ 위원회에는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각급단위 농촌지도기관에서 연구모임 육성을 총괄하는 부서의 팀장으로 한다.
- ④ 위원회는 연구모임의 등록, 부서별 사업지원, 활동방향 심의 등의 기능을 할 수 있다.

**제7조(운영지원)** ① 각급단위 농촌지도기관은 효율적인 연구모임 육성을 위하여 전담부서를 지정한다.

- ② 연구모임별 전담지도사(연구사) 1인 이상을 지정한다.
- ③ 각급단위 농촌지도기관의 시범사업 및 주요사업을 연구모임 회원 중심으로 선정할 수 있다
- ④ 연구모임의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지원을 위하여 농촌지도공무원 전문지도 연구회 활동과 연계하여 활동할 수 있다.

**제10조(평가)** ① 매년 연구모임을 비교 평가하여 우수 연구모임에 대하여는 시상하고 인센티브사업을 우선 지원한다.

##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